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에 관한 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3 년 1 월 24 일

청 원 인

성 명 : 김 병 호

주 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김 병 호 (인) 외 27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101동 1001호
	성명 : 김 병 호
건명	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대한 개정 청원
소개년월일	2013년 1월 24일

소개의견

청원인 김병호는 대한민국 모의 청소년 국회 국제협력상임의원 이다. 2013년 1월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개최한 임시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안건은 『청소년 국제교류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혹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안건』이다.

협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『정부 령의 청소년 국제 교류 지도자 양성 과정의 개설』이다.

신구문 대조표

<p>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</p> <p>제54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</p> <p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4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</p> <p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정부산하의 청소년 국제 교류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한다. (신설)</p> <p>⑤차상위 이하 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. 정확한 집단의 기준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정한다.(신설)</p>
---	--

소 개 의 원

인

청원서

<p>현행</p> <p>제 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</p> <p>1.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</p> <p>2.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,청소년활동프로그램,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,시행해야 한다.</p> <p>3.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,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,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개정</p> <p>제 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</p> <p>1.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</p> <p>2.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,청소년활동프로그램,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,시행해야 한다.</p> <p>3.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,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,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.(개정)</p> <p>4.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한다.(신설)</p>
---	---

1. 제안이유

청소년 활동 진흥법 [5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·청소년활동프로그램·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] 라고 정해져 있지만,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제 54조 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에는 구체적인 청소년 지도자의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.

2. 주요골자

제54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**정부산하의 청소년 국제 교류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**

⑤ **경제·환경적 취약집단 우선으로 지원한다. 정확한 집단의 기준은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정한다.**

청원인 성명 :

청원인 주소 :

청원인 전화번호 :